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94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유의동 · 김상훈 · 박성훈
김기현 · 박정하 · 유용원
백종현 · 김선교 · 고동진
조은희 · 한지아 · 김 건
한동훈 · 박수민 · 이준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협정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과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구분 없이 소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역'과 비상시적인 훈련과 시설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여구역' 등은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공여구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한미군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용자·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주둔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공장의 신설,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 사. 주둔지역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8조).
-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에 문화·관광시설이 적절히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둔지역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는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25조).

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변 지역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3. “주둔지역”이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공여구역”이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5. “주변지역”이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 “시·도지사”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8. “시장·군수·구청장”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둔지역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손실의 보상과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의 원활한 지역활동과 교류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둔지역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둔지역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둔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둔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3. 주둔지역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둔지역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주둔지역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 주둔지역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둔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며,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

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자) 제6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8조

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①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둔지역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둔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주둔지역”으로 본다.

제14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주둔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둔지역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주둔지역에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전이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주둔지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주둔지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주둔지역에서 지방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4. 전력시설 설치비

제19조(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시설을 주둔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둔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둔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안전사업 우선지원) 국가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보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편익 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의 설치) ①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피해상담
2.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 및 처리결과 실태조사
3.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피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평택시개발사업 및 평택시등 지원사업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